

수산물품질관리법 제정 · 공포

- 법률 제6399호(2001. 1. 29) -

해양수산부는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수산물에 대한 관리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육성하여 수산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危害要素重點管理制度)를 도입하는 등 강화된 국제관리 기준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함으로써 상품성을 높이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했다.

본 란에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의 전문을 게재하여 식품영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편집자 注〉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산물에 대한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수산물의 상품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수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산물”이라 함은 이식용수산물을 제외한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2. “이식용수산물(移植用水産物)”이라 함은 수산업법 제7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식물을 말한다.
3. “유전자변형수산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 또는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수산물 및 이식용수산물을 말한다.
4. “수산가공품”이라 함은 수산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 또는 재

료의 사용비율 또는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5. “수산특산물”이라 함은 수산가공품 중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6. “수산전통식품”이라 함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7. “수산물가공업”이라 함은 수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 또는 가죽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8. “표준규격”이라 함은 수산물의 포장 규격과 등급규격을 말한다.
9. “지리적표시”라 함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명성·품질 그 밖의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원산지”라 함은 수산물이 생산·채취 또는 포획된 국가·지역 또는 해역을 말한다.
11. “위해물”이라 함은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금속·방사능·항생물질·병원성미생물 및 유독성물질 등을 말한다.
12. “병충해”라 함은 수산동식물 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세균·바이러스 및 기생충 등 병원생물을 말한다.
13. “생산자단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식품위생법 및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① 이 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 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2. 표준규격에 관한 사항
3. 물류표준화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5. 지리적표시에 관한 사항
6.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
7.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에 관한 사항
8.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9.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에 관한 사항
10.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
11.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수산물·수산가공품의 검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중요 사항

③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⑤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특허청·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공무원중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와 해양수산부소속 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 자
 2. 다음 각목의 단체 및 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중에서 지명한 자
 - 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나.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 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국식품공업협회
 -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및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의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또는 소비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 자
- ⑥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⑦심의회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수산물의 품질관리

제5조(표준규격화)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유통능률을 향상하게 하며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 수산물의 표준규격을 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규격에 맞는 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이라

한다)을 출하하는 자는 포장의 표면에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③표준규격의 제정절차·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품질인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특산물 및 수산전통식품(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기준·절차·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품질인증의 유효기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그 유효기간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스스로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산자단체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때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품질인증을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때

④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품질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을 향상하게 하고 이를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제도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하 “지리적표시품”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대상품목 및 대상지역의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원산지의 표시) ①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 ①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수산물에 유전자변형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대상 품목의 선정,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표시정지 등의 처분)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이 표시한 규격에 미달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3조(표시방법의 시정명령)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품의 표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의 방법을 위반한 자에게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수산물·수산가공품에 표준규격의 표시, 품질인증의 표시, 지리적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2.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또는 지리적표시품 그 밖의 수산물·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허위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의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에 다른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을 혼합하는 행위
4.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를 한 수산물에 다른 수산물을 혼합하는 행위

제3장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 및 관리

제15조(가공산업육성시책의 강구)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수산물가공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항
2. 수산물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3. 수산물가공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수산물가공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수산물가공산업육성을 위한 투자·융자에 관한 사항
6. 수산전통외식산업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수산물가공산업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제16조(자금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에 의한 수산전통식품의 가공 또는 그 기능의 전수
3. 수산전통외식산업의 개발 및 보급
4. 수산물가공기술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5.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표준규격화 및 물류표준화의 촉진을 위한 포장자재·시설 및 자동화장비의 매입

6. 그 밖에 수산물가공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수산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의 대상자가 수산가공품의 생산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동의·승인·해제 등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의 지정해제
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3.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5.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6. 수도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의 설치인가
7.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
8.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수산전통식품의 개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개발과 그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전통식품의 계승·발전과 그 가공기능인의 명예를 위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하는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를 실시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수산물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①수산물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에게 등록을 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또는 취소)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때
2. 수산업법·어장관리법·내수면어업법 또는 이들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고자 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우선구매)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품질을 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도매시장 또는 수산물공판장에서 우선적으로 상장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 및 지리적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22조(위생관리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해역의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과의 협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수출상대국에서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산·가공 등 각 단계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생산·가공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하여 생산단계·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前段階)의 과정에 위해물이 혼입 또는 잔류하거나 수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지정해역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해역을 지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의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①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 및 제2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시설(이하 “생산·가공시설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는 생산·가공시설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그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가공·출하하는 수산물·수산물가공품 또는 그 포장에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실 또는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그 사실을 광고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절차·등록방법·변경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조사·점검)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해역과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 위생관리기준 및 제23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점검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및 지정해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해역이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의 생산을 제한하거나 지정해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8조(생산·가공의 중지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이나 그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지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 또는 등록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이행하는 때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4.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때
5. 생산·가공시설등에서 생산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서 위해물이 검출된 때
6. 생산·가공·출하·운반의 시정·제한·중지명령 또는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하는 때

제5장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

제29조(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 ①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은 품질 및 규격의 적합여부, 위해물의 혼입여부 등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외국과의 협약 또는 수출상대국의 요청에 의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외의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한 검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사인력 또는 검사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꾸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정해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생산·가공시설에서 위생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시설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가공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3.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선상수산물가공업에 한한다)을 등록한 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어선으로 해외수역에서 포획 또는 채취하여 현지에서 직접 수출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외국과의 협약을 이행하여야 하거나 외국의 일정한 위생관리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절차·방법,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해양수

산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식품위생관련 기관을 수산물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검사업무의 범위 및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검사를 거짓으로 하거나 성실하지 아니하게 한 때

제31조(검사결과의 표시) 검사기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의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검사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살아 있는 수산물 등 성질상 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검사를 신청한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때
2. 정부에서 수매·비축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결과의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검사에 불합격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의 처분을 요청하여야 하는 때

제32조(검사증서의 교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결과 검사기준에 적합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과 제29조제5항의 경우에 해당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33조(폐기·판매금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식품위생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서 위해물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폐기 또는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재검사) ①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원의 부족 등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에 검사한 검사원외의 검사원이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1.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사 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때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식품위생관련 전문기관이 검사하여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와 다른 검사 결과를 제출하는 때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결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제35조(검사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장 이식용수산물의 검역

- 제36조(이식용수산물에 대한 검역)** 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검사 및 검역(이하 “검역”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검역신청이 있는 때에는 검역인력 또는 검역장비의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검역하여야 한다.
-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검역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검역하게 하여야 한다.
- ④검역의 기준·절차·방법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파견검역)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관을 해당국가에 보내어 검역을 할 수 있다.

1. 이식용수산물을 국내에 수입하는 자가 그 수산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2. 이식용수산물의 수출국가에서 그 국가의 이식용수산물을 수출하기 전에 검역을 요청하는 때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국가에서 검역을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검역을 요청한 해당국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을 받은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국가에서의 검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검역증명서)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한 결과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역한 결과 검역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검역을 신청한 자(이하 “검역신청인”이라 한다)에게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검역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역신청인 및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교부절차·교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이식용수산물의 폐기명령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검역신청인·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 결과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재검역 결과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이식용 수산물의 폐기 또는 반송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검역신청인·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및 검역신청인·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스스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또는 반송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재검역)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한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만 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때를 제외하고는 처음에 검역한 검역관외의 검역관이 검역하게 하여야 된다.

1.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으로 검역기관이 인정하는 때
2.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이 검역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역한 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는 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다.

제41조(검역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을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검역판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장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42조(수산물의 안전성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재 등과 수산물에 잔류된 중금속·패류독소·식중독균·항생물질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생산단계의 수산물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을,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前段階)의 수산물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용수·어장·자재 등
2. 생산단계·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단계의 수산물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대상품목의 선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성조사의 결과 잔류된 중금속·패류독소·식중독균·항생물질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이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용기준 또는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때에는 생산·저장 또는 출하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는 생산단계인 경우에 한한다.

1. 허용기준 또는 잔류허용기준의 초과사실 통지
2.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명령과 이용·사용의 금지
3.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명령과 처리방법의 지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생산자는 그 조치 받은 내용에 따라 그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 그 이용·사용의 중지 또는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받은 수산물의 저장자 또는 출하자가 그 통지된 내용에 따라 그 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4조(검정) ①수산물의 품질·규격·성분·잔류물질 또는 이식용수산물의 병충해 감염여부 등에 대한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정인력 또는 검역장비의 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검정을 실시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사실을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검정의 항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5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부에서 구매하는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 표시의 등록
3.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시설등의 등록
5.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6. 제36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 및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
7.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제46조(출입·조사·시료채취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의 확인·조사·점검·검사·재검사·검

역 또는 재검역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영업장소·사무소·창고·항공기·선박 그 밖의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수산물·수산가공품·자재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점검·검사·재검사·검역 또는 재검역하게 하거나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채취·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영업관계의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이하 “출입등”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표준규격품의 규격·품질인증품의 품질인증기준 또는 지리적표시품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2.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3. 제1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수산물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
 4.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시설등에 대한 조사·점검
 5.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
 7.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출입등을 하는 때에는 수산물·수산가공품·자재 등의 생산자·가공자·소유자·점유자·판매자 또는 관리인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7조(명예감시원)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표준규격품·품질인증품·지리적표시품,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의 표시가 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전자변형의 표시가 된 수산물,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조사 대상품(이하 이 조에서 “유통수산물”이라 한다)의 공정한 유통질서확립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 시장 및 자생적인 수산물 판매시장의 임·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수산물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유통수산물에 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명예감시원에게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포상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원산지의 표시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보고)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생산·가공시설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정해역의 위생조사에 관한 사항 및 검사·검역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품질인증업무의 정지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의 금지, 표시의 정지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
3.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취소
4.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시설등이나 그 운영자에 대한 생산·가공·출하 및 운반의 지정·제한·중지명령,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
6.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검사업무의 정지
7.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판정의 취소
8.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판정의 취소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 또는 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관련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2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의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의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의 임·직원,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검사기관의 임·직원 및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생산자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수산업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등 수산관련 법인의 임·직원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9장 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한 자
3.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한 자
4.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를 받은 자
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외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7. 제3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이식용수산물을 수입한 자
8.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 36조의 규정에 의한 검역,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검역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역을 받은 자
9.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 또는 반송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명령, 판매의 금지 또는 표시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역에서 수산물의 생산제한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가공·출하 및 운반의 지정·제한 또는 중지 명령에 위반하거나 생산·가공시설등의 개선·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포장이나 내용물을 바꾼 후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용수·어장·자재 등의 개량, 그 이용·사용의 중지 또는 수산물의 출하연기·용도전환 또는 폐기 등

을 하지 아니한 자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또는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전자변형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방법의 지정명령에 불응한 자
 4. 제44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광고를 한 자
 5.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산물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가공시설등을 등록한 자로서 제 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수산물검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수산물가공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수산물의 표준규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5조 및 농수산물가공업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수산물특산물 및 수산물전통식품은 각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의 변경·정지, 판매의 금지, 인증·등록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 판매의 금지, 표시정지 등의 처분 또는 인증·등록의 취소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검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정해역과 등록한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은 제24조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거나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수산물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검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물검사원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검사원 및 검역관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 제11조에 의한 검사결과의 표시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검사합격증명서는 각각 제31

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의 표시 및 검사증서로 본다.

제6조(그 밖의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3조 내지 제5
조에 규정된 사항외에 수산물·수산
가공품 및 이식용수산물 등에 대하여
중전의 수산물검사법·농수산물품질
관리법·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한 처분 그 밖
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
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
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
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중전의 수산물검사
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가
공산업육성법 및 수산업법의 규정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
에 있어서는 각각 중전의 규정에 의
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수산물

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農水産物品質管理法”을 “農産
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3호 내지 제7호,
제3조제1항·제2항제6호 및 제9호, 제
2장의 제목,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
5조제1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
제1항 및 제3항, 제9조제1항제1호 내
지 제3호 및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0조제2항, 제12조의 제목·제1항
본문·제1호 및 제2호,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2항, 제17조 본
문·제3호 및 제4호, 제18조제1항 단

서, 제27조의 제목 및 제1항, 제29조
의 제목 및 제1항, 제30조, 제31조제1
항 본문·제2항 및 제3항, 제32조 본
문, 제35조제2호 및 제36조제2호중
“農水産物”을 각각 “農産物”로 한다.
제1조, 제7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제
1호중 “農漁業人”을 각각 “農業人”으
로 한다.

제2조제1호중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水
産物”을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
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생산자단체”라 함은 農業協同
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
合 및 中央會, 山林組合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그 밖의 農林部令이 정하는 단체
를 말한다.

제2조제5호중 “함은 農水産物 및 그
加工品”을 “함은 農産物 및 그 加工
品(水産物을 主原料 또는 主材料로
한 加工品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으로 한다.

제2조제6호중 “生産·採取 또는 捕獲
된 國家·地域 또는 海域”을 “생산
또는 採取된 국가 또는 지역”으로 한다.

제2조제7호, 제3조제2항제8호, 제16조
의 제목 및 제1항 내지 제3항, 제17
조 본문·제1호·제2호 및 제4호, 제
18조제1항 내지 제3항, 제3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중 “遺傳子變形農水産
物”을 각각 “遺傳子變形農産物”로 한다.

제3조제1항중 “農林部長官 소속하에
農産物品質管理審議會를 두고, 海洋
水産部長官 소속하에 水産物品質管理
審議會”를 “農林部長官 소속하에 農

産物品質管理審議會”로 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본문·제3항 및 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33조 본문,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2항 중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및 제3항, 제6조,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 제31조제1항제3호, 제32조 본문 및 단서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중 “農藥·重金屬·곰팡이독소·패류毒素·食中毒菌”을 “農藥·重金屬·곰팡이독소·食中毒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본문·제2호 및 동조제2항중 “土壤·用水·漁場·資材”를 각각 “土壤·用水·資材”로 한다.

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중 “表示對象農水産物”을 각각 “表示對象農産物”로 한다.

제29조제1항 내지 제3항중 “農水産物名譽監視員”을 각각 “農産物名譽監視員”으로 한다.

제34조제2항중 “農林水産”을 “農林”으로 한다.

②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法”을 “農産物加工産業育成法”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7호,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중 “農水産物”을 각각 “農産物”로 한다.

제1조, 제2조제5호 및 제2장의 제목중 “農水産物加工産業”을 각각 “農産物加工産業”으로 한다.

제1조 및 제19조제1항중 “農漁業人”을 각각 “農業人”으로 한다.

제2조제1호중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水産物 및 畜産物”을 “農産物·林産物(石材 및 骨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畜産物”로 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생산자단체”라 함은 農業協同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山林組合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組合 및 中央會 기타 農林部令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2조제4호, 제4조제2항제6호, 제3장의 제목 및 제16조중 “農水産物加工品”을 각각 “農産物加工品”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본문,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중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을 각각 “農林部長官”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

成審議會”를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하고, 동조제1항중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을 “農産物加工産業育成”으로,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를 두고 海洋水産部長官 소속하에 水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를 “農産物加工産業育成審議會”로 한다.

제5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5항중 “農林部令 또는 海洋水産部令”을 각각 “農林部令”으로 한다. 제21조중 “農林水産”을 “農林”으로 한다.

③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의 제목 “漁獲物運搬業 및 水産物加工業”을 “漁獲物運搬業”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水産物加工業의 등록 등)
水産物加工業의 등록·신고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50조 및 제51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1조의2제1항중 “第47條第1項第3號 또는 第50條第1項第2號”를 “제47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93조제4호중 “第47條 또는 第50條”를 “제47조”로 한다.

제94조제1항제1호중 “第46條第1項 또는 第49條第1項”을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제95조제1호중 “第46條第1項 또는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許可를 받았거나 登錄을 한 者”를 “제46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96조제2호중 “第47條第1項第2號 또는 第50條第1項第2號”를 “제4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9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44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漁業을 경영한 자

④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0호 및 제6조제25호중 “農水産物品質管理法”을 각각 “農産物品質管理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한다.

⑤인삼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農水産物品質管理法”을 “農産物品質管理法”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물검사법·농수산물품질관리법·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또는 수산업법이 나 그 規定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規定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